

과천도시공사 ESG위원회 운영규정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과천도시공사 사장 강신은

2026년 5월 8일

공사 규정 제171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부문에 대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과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ESG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 관계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p> <p>제3조(기능)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의 ESG 정책과 ESG 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심의 공사의 ESG 경영전략과 그 이행 계획에 대한 자문 기타 ESG 경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안건</p>	<p>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 ----- ----- ----- 구성과 운영에 ----- -----.</p> <p>제2조(적용범위) ----- ----- 정관에 별도로 ----- ----- 규정에 따른다. ----- -----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p> <p>제3조(기능)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 ----- 각종 ----- 심의의결 ----- ESG경영 추진성과에 대한 점검·평가 공사의 ESG 경영전략 및 그 이행 계획에 대한 자문 <p>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안건</p>	<p>용어 정비</p> <p>용어 정비</p> <p>기능 명확화</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u>공사 임직원 및 민간전문위원 등을 포함하여 30인 내외의 인력풀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② <u>위원회 활동 지원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비상임이사 중 1명, 운영관리본부장 및 ESG경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민간 전문위원은</u> 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u>호선하여 선임한다.</u></p> <p>④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u>위임자</u>,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외부위원의 사임 등으로 <u>새로이</u>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p> <p>⑥ 위원회 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u>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u>,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위원회 소집 및 심의결과 통보</u> <u>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u> (생략) 	<p>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 <u>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u></p> <p>② <u>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 비상임이사 중 1명 및 개발사업본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외부위원은</u> -----</p> <p>③ ----- <u>호선한다.</u></p> <p>④ ----- <u>위원장이 지명한 위원,</u> -----</p> <p>⑤ ----- <u>새로</u> -----</p> <p>⑥ ----- <u>ESG경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장을 간사로 두며,</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u> <u>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u> (현행과 같음) 	<p>위원회 구성체계 개편</p> <p>용어 정비</p> <p>용어 정비</p>
<p>제5조(상정 안건) ①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략) 그 밖에 환경, 사회, <u>지배구조 관련 주요 이슈 등</u> 위원장이 <u>심의 및 논의가</u>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p>②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 (생략) 주요 <u>비재무 이슈 사항</u> 및 대응 방안 	<p>제5조(상정 안건) 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과 같음) ----- <u>지배구조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u> 위원장이 <u>심의가</u> ----- <p>②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 (현행과 같음) -- <u>비재무적 현안</u> ----- 	<p>용어 정비</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4. (생략)</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이 있는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 개최 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회 의</p> <p>제6조(소집 및 통지)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의 유고 시 제4조 제4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②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p> <p>③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ESG위원회 소집통지서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p> <p>④ 회의소집의 재적위원수는 7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민간전문위원은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p> <p>제7조(의결 방법) ①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직무윤리와 관련한 사전진단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제척·회피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 위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p> <p>③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p>	<p>4. (현행과 같음)</p> <p>③ ----- ----- 별지 제1호서식----- 위원회 개최 예정일 10일 전까지 ----- -----.</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회 의</p> <p>제6조(소집 및 통지) ① ----- -----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4항에 -- -----.</p> <p>② ----- ----- 긴급하거나 ----- ----- 서면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p> <p>③ ----- 소집할 때에는 ----- 별지 제2호서식 ----- ----- ----- 회의 개최 전날까지-----.</p> <p>④ <삭제></p> <p>제7조(의결 방법)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p> <p>② ----- ----- ----- ----- 제1항의 ----- -----.</p> <p>③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기록하고, 심의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	<p></p> <p style="text-align: center;">용어 정비</p> <p></p> <p style="text-align: center;">의결방법과 무관한 규정 삭제</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④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 <p>제8조(회의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1.~4. (생략)</p> <p>제9조(통지업무) 위원회는 의결한 내용이 있는 경우 간사는 의결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관계부서에 심의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p> <p>제9조의2 <신설></p> <p>제10조(관계인의 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보 칙</p> <p>제11조(위원회 지원) 공사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시설, 인력, 예산 등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p> <p>제12조(수당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관련 민간전문위원에게 자문 등을 받은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3조(기타 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④ <삭제></p> <p>제8조(회의록) 간사는 ----- 별지 제4호서식에 ----- 1.~4. (현행과 같음)</p> <p>제9조(통지업무) 위원회가 안건을 의결한 경우 ----- 7일 ----- ---- 그 결과를 관계 부서에 ----- -----.</p> <p>제9조의2(이사회 보고) 위원회는 심의의결 또는 자문한 사항 중 중요하거나 공사 ESG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0조(관계인의 의견 청취) ----- ----- 관계부서의 직원 ----- 참석하게 하여 -----.</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보 칙</p> <p>제11조(위원회 지원) ----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 ----- 지원을 ----- -----.</p> <p>제12조(수당 지급) 공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과 외부전문가에게 참석 수당 또는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3조(기타 세부사항) <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 style="text-align: center;">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p>	<p>통지기간 현실화</p> <p>이사회 보고체계 신설</p> <p>용어 정비</p> <p>용어 정비</p> <p>지급 기준 명확화</p>

<현행>

【별지 제1호서식】

<p>ESG위원회 부의안건 (제5조제3항 관련)</p>

제 회 ESG위원회			
년 월 일		의안번호	제 호
의 제			
구 분	의 결 사 항	보 고 사 항	

제 안 자

주 문

제안사유

의결사항

참고사항

1. 제안근거
2. 예산조치
3. 합 의
4. 절 차
5. 기 타

【별지 제2호서식】

ESG위원회 소집통지서 (제6조제3항 관련)

수 신 :

년도 제 회 ESG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2. 장 소 :

3. 부의안건 : 별 첨

년 월 일

과천도시공사 ESG위원회위원장 (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제7조제2항 관련)

위 원 명 : (인)

연번	진 단 내 용	체 크 사 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2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허가·면허·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아니오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아니오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아니오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관, 단체,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아니오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아니오 ()

※ ‘예’ 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윤리 서약서(제7조제2항 관련)

직위 : ESG위원회 위원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 본인은 ESG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에서의 공정 및 정치적 중립성 준수
2.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3.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6.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7.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8.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행위 금지
9.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서명)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5.06.02.)

20 년 제 회 ESG위원회 심의의결서 (제7조제4항 관련)

일 시	. . .(요일) 00:00
장 소	
참석현황	○ 총 위 원 : 명 ○ 참석위원 : 명
심의안건	
심의결과	

20 년 월 일

과천시공사 ESG위원회

위 원 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과천시공사사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5.06.02.)

20 년 제 회 ESG위원회 회의록(제8조 관련)

진 행(발언자)	토의내용

<개정>

【별지 제1호서식】
(제5조제3항 관련)

ESG위원회 부의안건

제 회 ESG위원회			
년 월 일		의안번호	제 호
의 제			
구 분	의 결 사 항	보 고 사 항	

제 안 자

주 문

제안사유

의결사항

참고사항

1. 제안근거
2. 예산조치
3. 합 의
4. 절 차
5. 기 타

【별지 제2호서식】
(제6조제3항 관련)

ESG위원회 소집통지서

수 신 :

년도 제 회 ESG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2. 장 소 :

3. 부의안건 : 별 첨

년 월 일

과천도시공사 ESG위원회위원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제7조제3항 관련)

20 년 제 회 ESG위원회 심의의결서

일 시	. . .(요일) 00:00
장 소	
참석현황	○ 총 위 원 : 명 ○ 참석위원 : 명
심의안건	
심의결과	

20 년 월 일

과천도시공사 ESG위원회

위 원 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과천도시공사사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제8조 관련)

20 년 제 회 ESG위원회 회의록

진 행(발언자)	토의내용